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보 도 자 료	(배포) 2019. 3. 19.(화)

3.19일(화) 13:30 이후 사용

비고	# 브리핑 : 3.19(화) 13:30, 정부서울청사 국무2차장 # 공동배포 : 기재부, 노동부, 국토부, 산업부, 환경부, 농식품부, 해수부	
담 당	국무조정실 경제총괄과	과장 손진욱, 서기관 강희민 (044-200-2178, 2182)
	기획재정부 공공안전정책팀	팀장 황병기, 사무관 이찬종 (044-215-5670, 5671)
	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	과장 고광훈, 사무관 김남진 (044-202-7722, 7726)
	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	과장 김정희, 사무관 김민정 (044-201-3213, 3216)
	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	과장 오승철, 사무관 권용균 (044-203-5240, 5158)
	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실	과장 김용득, 사무관 전승찬 (044-201-6490, 6493)
	농림축산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실	팀장 김규욱, 사무관 김수현 (044-201-1461, 1853)
	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	과장 류종영, 사무관 나유성 (044-200-5770, 5773)

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, 획기적으로 줄인다!

- 정부,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-

◈ **(목표) '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(60%) 감축**

◈ **주요 추진 전략**

① **(기관경영)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** 수익보다 **안전 중시로 전환**

- '**평가와 책임**'**의 원칙을 확립하여**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 강화
- **안전분야 인력 충원**과 **시설투자**를 신속히 추진
- 모든 공공기관은 **안전관리기본계획**을 수립
- 산재위험이 높은 기관은 **'안전관리 중점기관'**으로 선정하여 매년 산재감축 목표설정 및 관리

② **(작업현장)** 잠재된 위험을 발굴하여 **사고**를 **예방**하는 **작업 현장** 조성

- 작업장의 위험요소 평가·진단을 강화하고, **2인1조** 등 **사고예방형 작업 방식** 도입
- 시스템 작업대, 컨베이어벨트 방호 장치 등 **핵심시설**을 개선하고,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선이 **긴급히 필요**한 경우 수의계약 허용

③ **(협력구조)** 협력업체의 산재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

-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산재를 **원청의 산재 보험료율** 산정에 반영하고, **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대상을 확대**
- 모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중대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
- 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'안전관리자, 안전관리비' 제도개선

④ **(인프라)** 안전의식, 지도감독, 통계·규정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

- 안전교육, 홍보를 강화하고, **공공기관 작업장**에 대한 **산업안전감독을 확대**
- **공공기관 안전관리 규정** 및 **개정 산안법·건진법 조기이행 지침** 제정
- 매 분기별 **공공기관 산재 현황 공개**

□ 정부는 3월 19일(화) 오전,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, **「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」을 확정**했습니다.

○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"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"고 지적하면서, **위험한 작업**이 이루어지는 **사업장의 실태**를 제대로 파악하여 **재발방지 대책**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**안전강화 대책**을 마련하였습니다.

○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**'정부합동 TF'**를 운영하여 **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**과 **전문가 의견수렴**을 실시하였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이번 대책은 **'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(60%) 감축**하는 것을 목표로, ①기관의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.

1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: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**안전·생명 중시**로 전환하겠습니다.

○ 공공기관은 매년 **'안전관리 기본계획'**을 수립하도록 하고,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**'안전관리 중점기관'***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*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,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('19년 32개)

○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**인력 확충***과 **안전시설 투자**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.

*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, 4월 이후 기관별로 신규 인력충원 등 추진

** 노후시설 개량,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

○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·전문가가 참여하는 **'안전경영위원회'**를 신설하고, 작업장에는 원·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**'안전근로협의체'**를 구성하겠습니다.

○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*을 대폭 높이는 등 **경영평가** 제도를 **안전 중심으로 운영**하겠습니다.

* ①'18년 최대 2점 → '19년 최대 6점으로 배점 상향 ②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 별도 신설 ③중대재해이면서 법령 위반시 0점 처리

○ 또한, 기관장이 **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**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**'해임 건의'**를 추진하겠습니다.

2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: 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겠습니다.

○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·도급 작업장까지 **'위험성평가'**를 강화하겠습니다.

*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주무부처에 제출

○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**'안전진단명령'**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**사전 진단체계**를 정비하겠습니다.

○ 위험 작업장에는 **2인 1조**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, **신입직원의 단독 작업**을 **제한**하겠습니다.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·발주청에게 **작업 일시중지를 요청**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산재예방을 위한 **핵심 시설·설비***를 **확충**하고, IoT·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,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**수의계약**을 **허용**하는 등 **'안전한 작업환경'**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
* 예) (건설) 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, (교통)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설치, (전력) 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, 안전로프 활용 확대

3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: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.

○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**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**에 **반영***하고, **원하청 산재통합관리****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.

* (現) 건설업에 대해 적용 → (改) △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시 △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시 △하청 산재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

** (現) 제조업, 철도운송업,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 → (改) 전기업도 추가,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

○ **공공 입찰**에서 **안전관리 평가대상**을 **확대**하고*, 중대재해 유발 업체에 대한 **입찰 참가자격 제한**을 **강화**하며**, 안전관리 관련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***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* (現) 종합심사 낙찰제(300억원 이상 공사)에서 안전관리평가 →
(改) 적격심사 낙찰제(300억원 미만)에서도 안전관리평가 신설

** (現) 사망자 2명 이상 , 6개월~1년6개월 제한 → (改) 사망자 1명 이상 (건설공사는 2명 유지), 최장 2년 제한

***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(발전5사→모든 공공기관),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(시공사→발주자), 벌점부과 대상 확대 (50억이상→모든 공사)

○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·조언하는 **'안전관리자'** 선임*을 확대하고 **'안전관리비' 편성대상****도 **확충**하겠습니다.

* △(건설업) (現)공사 초반·후반 1명이상 → (改)전 기간에 걸쳐 2명이상(1500억원+ 공사)
△(전기·가스업) (現) 안전관리자 1천명 이상 2인→ (改)5백명 이상 2인

** △(건설업) 안전관리비 편성 대상 확대(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→ 2천만원 이상)
△(非건설업)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

○ **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**도 1·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**차질없이 추진**하겠습니다.

- 특히, **발전5사**의 경우 **연료·환경설비 운전 분야**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, **경상정비**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4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: 공공기관의 안전의식, 정부의 지도감독, 규정·통계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.

○ 경영진·현장노동자 등 **대상별로 특화된 교육**을 실시하고,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인 **안전경영자회의**에 **공공기관도 참여**하여 우수사례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.

○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**정부의 일제 점검***을 실시하고, CEO·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**공공기관 자체점검**도 내실화하겠습니다.

* 노동부, 상·하반기 100개소씩 200개 사업장 대상

○ **공공기관 안전관리**의 기본이 되는 **지침**을 3월에 제정하고, 개정 **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**(각각 '20.1, '19.7) **되기 전이라도** 공공기관은 조기에 **이행**하도록 하며, 공공기관의 **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**하겠습니다.

□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**차질 없이 이행**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·개정 등 **후속조치**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.

□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"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**조속히 이행**하고 **철저히 점검**하여 **가시적인 효과**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"고 강조하면서

○ "공공부문부터 **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**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**솔선수범**해 달라"고 당부했습니다.

※ <별첨>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